

## 한국콘텐츠진흥원 · 독립제작사협회 지원사업 협약서

한국콘텐츠진흥원과 (사)독립제작사협회는 방송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‘한국콘텐츠진흥원-(사)독립제작사협회(이하 “양 기관”) 공동 세미나 개최’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서를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본 협약은 상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양 기관의 권리 및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지원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.

**제2조(관리규정 등)** 본 협약서에 사용하는 관리 규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.

1.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
2. 콘텐츠지원사업 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등

**제3조(사업내용 및 범위)** 사업내용과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추후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양식의 ‘수행계획서’를 마련할 수 있다.

1. 협약당사자 : (전담기관)한국콘텐츠진흥원/(주관기관)(사)독립제작사협회
2. 사업명 : 한국콘텐츠진흥원-(사)독립제작사협회 공동 세미나 개최
3. 과제명 : KIPA상 시상식 및 한국콘텐츠진흥원-(사)독립제작사협회 공동 세미나 지원
4. 협약기간 : 2015년 11월 30일 ~ 2015년 12월 31일(1개월)
5. 사업비 : 총 이천이백만원정(₩22,000,000원)
  - (지원금) 이천만원정(₩20,000,000원)
  - (사업자부담금) 이백만원정(₩2,000,000원)

**제4조(사업비의 지급)**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비 중 지원금(이하 “지원금”)을 (사)독립제작사협회에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.

(단위: 원)

1차(90%)	2차(10%)	총 지원금
18,000,000	2,000,000	20,000,000

**제5조(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)** ① (사)독립제작사협회는 별도의 사업비 관리 및 집행 계정을 개설하여 사업내용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. ② (사)독립제작사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비 사용실적을 협약 기간 종료시점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 ③ (사)독립제작사협회는 사업비 집행 잔액 및 정산잔액(불인정 사업비, 이자 포함)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반납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사업결과의 제출)** (사)독립제작사협회는 협약기간 종료시점에 사업 결과보고서를 한국콘텐츠진흥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7조(협약의 변경)** ① 본 협약은 관리규칙에 따라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. ②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변경 지급할 수 있으며, 사업 수행계획 변경에 대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요청 시 (사)독립제작사협회는 변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.

**제8조(협약의 해약)** 본 협약은 관리규칙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고, 이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금에 상당하는 사업비 또는 기자재 등 유형적 발생품을 (사)독립제작사협회로부터 환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도치를 할 수 있다.

**제9조(지적재산권 등의 귀속)** 당해 과제수행의 성과로 취득되는 지적 재산권, 보고서 판권 등은 관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0조(신의성실 의무) 본 협약이 목적하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양 기관은 신의성실을 다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1조(권리·의무 승계의 제한) (사)독립제작사협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사전 동의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여 또는 승계할 수 없다.

제12조(관계법령 및 관리규칙 준수) (사)독립제작사협회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관리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3조(해석)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,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해석에 우선한다.

본 협약은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정서를 2부 작성하고, “양 기관” 이 각각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5년 11월 30일

한국콘텐츠진흥원

원장 송성각



(사)독립제작사협회

회장 안성주

